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7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이해식 · 임미애 · 송기현  
김영배 · 박상혁 · 박균택  
박희승 · 이주희 · 최혁진  
염태영 · 이기현 · 양부남  
박정현 · 윤준병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

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

⑥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③ ~ ⑤ (생략)</p> <p><u>&lt;신 설&gt;</u></p> <p>⑥ (생략)</p>	<p>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u></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